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0. 12. 17 선고 2020가단264199 판결 [부동산압류등기 말소절차이 행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1. 7. 16 선고 2021나51469 판결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0. 12. 17 선고 2020가단264199 판결

전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환

피 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

소송대리인 변호사 천효재

변론 종결 2020. 12. 3

판결 선고 2020. 12. 17

주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. 4. 26. 접수 제1856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C의 아들이자 대리인인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을 매수하고 2012. 4. 6.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원고는 C에게 매매대금 중 50,000,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D으로부터 '잔금 50,000,000원 미지불 상태이고, 별도로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0,000,000원을 설정하는 조건임'을 명기한 영수증을 교부받고,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와 사이에서 채권 최고액 60,000,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D 명의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. 4.26. 접수 제18565호로 근저당권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'이라 한다)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.

나. 원고는 C로부터 위 매매잔금 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 당하여 2019. 4. 11. 이 법원 2018나62674호로 위 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.

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.

이에 원고는 2019. 6. 18. 위 매매잔금 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61,055,260원을 지급하였다

다. 이후 원고는 D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하여 이 법원 2020. 1. 31. 선고 2019가단15261호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. 위 판결은 2020. 2. 21. 확정되었다.

라. 한편,피고는 D에 대한 채권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2017. 1. 23.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타채3034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(이하 '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'이라 한다)을 받았다.

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갑 제1내지 6호증,을 제1호증의 기재,변론 전체의 취

2. 판단

가. C, D의 원고에 대한 채권 사이의 관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D도 원고로부터 매매잔금 50,000,000원을 유효하게 변제받을 수 있고 원고도 C나 D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,즉 C와 D은 묵시적으로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.

나. 불가분채권에 있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불가분채권관계에 있는 경우 민법 제410조 제1항에 따라 변제와 같은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불가분채권자 중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는바,C와 D은 불가분채권관계에 있으므로,불가분채권자 중의1인인 D을 채무자로 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다른 불가분채권자인C에게 미치지 아니한다.

따라서 원고가 C에게 채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{ 대법원 2015. 1. 15. 선고 2014다70511판결의 원심판결인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4. 9. 4. 선고 2014나10판결 참조} .따라서 원고는 C에 대한 변제로써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고,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.

3. 결 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,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윤지숙

별지